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26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희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1. 1. 12.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원주시 F 대 557평 중 348평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3. 11. 7. 접수 제13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같은 지원 1994. 3. 16. 접수 제8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 소유의 원주시 F 대 557평 중 348평에 관하여 피고 C, D, E의 피상속인 망 G 앞으로 1973.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3. 11. 7. 접수 제13383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B 명의의 같은 지원 1994. 3. 16. 접수 제8066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조정에 반하는 소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과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미 원고가 망 G과 피고 B을 상대로 위 대지 중 1345㎡1)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15072)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9나3054)에서 2010. 5. 9. 망 G과 피고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와 전소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소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수영

1) 약 407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말소를 구하는 348평보다 크고,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소를 구하는 위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